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6-156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미제출하여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바,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6. 11. 19.

천 안 고 용 노 동 지 청 장



1. 건　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

2. 근　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」 제12조제4항 및 제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, 같은법 제29조제3항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같은법 제15조제3항, 같은법 제21조제1항

3. 공고대상자 및 내용

연번	수급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수급자격 인정일	주소	처분 내용	송달불능 사유
1	김*수	951220 -*******	2026.06.24.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73번길 28-10, ***호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구직촉진수당 연속 미제출(미신청)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향후 3년간 재참여 불가	- 구직활동 이행과제 2회 이상 연속 미제출 및 연락 두절 - 출석통지 2회 문서 발송(반송) - 문자 발송 미응답 (수회 시도) -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폐문부재로 반송

4. 공고기간: 2026. 11. 19. ~ 2026. 12. 03.

※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.

<**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**: 2026. 12. 04. 의견제출기한: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(2026. 12. 13.)>

5. 의견제출 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고용노동지청 아산고용센터(7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0503-8803-0689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6.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아산고용센터 장미정(Tel. 041-570-55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